

오픈소스와 저작권 리스크 (Open Source S/W and Copyright Risk)

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
정진근 교수
[\(jkjeong@kangwon.ac.kr\)](mailto:jkjeong@kangwon.ac.kr)

Copyleft & Open Source

◆ 카피레프트(copyleft) 사상의 발생

- Unix를 좋아한 Richard Stallman 그리고 GNU Project
- 전략 : 사용자의 접근권과 사용권
- 전술 :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 고려
- FSF vs OSI : 이념적 vs 실용적
- GNU/Linux의 탄생과 open source community

Copyright & Open Source

◆ 오픈소스의 저작권법적 보호원칙

- 오픈소스는 저작권을 부정하는가
 - ✓ 카피레프트 이념을 구체적, 현실적으로 수용
 - ✓ 그러나, 저작권을 이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념의 보호
- GPL은 저작권의 포기인가
 - ✓ 저작권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GPL은 저작권 포기가 아님
 - ✓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 발생되므로, 포기의 의사가 없는 한 인정되어야 함
 - ✓ GPL은 명시적, 선언적으로 저작권을 설정한다는 규정을 둠

Copyright & Open Source License



출처 : <http://freshmeat.net/stats/#license>(OLIS에서 재인용)

Copyright & Open Source License

◆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3단계 구성

- 1단계 : 오픈소스에 대한 권리의 소유(당연소유의 선언적 의미)
- 2단계 : 오픈소스의 사용허락
- 3단계 : 오픈소스 공동체 이념의 전파
(재귀적 배포와 해제조건부 무효=virus effect & big bang)

◆ 오픈소스 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규정

- 공동체 외의 지적재산권 이용 및 침해 금지
- 동일한 공개 라이센스에 의한 재배포
- 담보책임 면책 특약 => 논란 가능성

Copyright & Open Source License

〈 표 2 〉 주요 OSS 라이선스의 특징 비교

라이선스의 특징 및 의무사항	BSD	Apache 2.0	GPL 2.0	GPL 3.0	LGPL 2.1	MPL	CDDL	CPL /EPL
복제 · 배포 · 수정의 권한 허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	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저작권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 (Reciprocity) 와 범위			derivative work	derivative work	derivative work	file	file	module
조합저작물(Larger Work) 작성 및 타라이선스 배포 허용	○	○			○	○	○	○
수정시 수정내용 고지			○	○	○	○	○	○
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여		○		○		○	○	○
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				○		○	○	○
이름, 상표,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	○	○				○	○	
보증의 부인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책임의 제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
출처 : 오픈소스SW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(OLIS)

Open Source & Risk

◆ 오픈소스 활용의 장점

- 프로그램의 기능에 관한 평가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원가절감
- 원시프로그램의 공개로 변화에 능동적 대처 가능/ 오류 수정 용이
- 트로이목마 유형의 국가기밀/기업기밀 유출방지 가능
- 독과점,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재 종속 탈피에 활용 가능

◆ 오픈소스 활용의 단점

- 치기어린 프로그램의 유통으로 인한 비용증가 가능성
- 프로그램의 하자발생시 당사자 특정의 어려움
-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가능
- 건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동기 저해로 장기적 비용증가

Open Source & Risk

-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미비
- 교육 및 지원 부족
- 관련 기술의 미확보와 운영인력의 부족
- 보안성의 미비
- 납품실적 자료의 미비
- 공급자들의 낮은 신뢰성
- 다른 플랫폼에서의 운영성 미비
- 구매 전 사전 검토 단계의 불확실
- 비용절감 가능성에 대한 미확인
- 예상치 못한 지적재산권 침해
- 하자담보책임의 부정
- 재공개의 부담

Open Source License & Risk

◆ 라이센스 선택 및 개발 시 재산권 형태에 따른 제안

- 독점적 권리 부정 : GPL, LGPL => 모든 라이센스와 통합 가능
- 부분적 독점권 인정 : MPL, NPL => GPL 계열 통합 불가
- 독점권 인정 : BSD, Artistic, MIT, Apache and Zope
- 단일의 표준 라이센스 방식을 지향하고, 정책적 고려의 다양성에 따라 다수의 표준 라이센스 정책 수립이 바람직함
- 기존의 라이센스를 정책적으로 선택한 후, 국내법적 문제점을 수정/이용하는 것이 커뮤니티와의 호환성 등에서 바람직함

주요 분쟁사례

- ◆ FSF vs Cisco :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
- ◆ Gpl-violation.org vs D-Link : 손해배상 판결
- ◆ 엘림넷 vs 하이온넷 : 영업비밀 인정

한국저작권위원회(OLIS)

The screenshot shows the OLIS website interface. At the top,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abs: 라이선스 (Licenses), 상담 및 컨설팅 (Consulting and Consulting), 프로젝트 (Project), 라이브러리 (Library), and **코드아이** (CodeAI). Below the navigation bar, there is a large orange banner titled "컨설팅 안내" (Consulting Guide) with a sub-section titled "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안내문" (Open-source Software License Consulting Guide).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four circular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consulting services:

-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전문 컨설팅**: Provides application source code analysis, identifies open-source software used in the application, and performs risk management.
-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(CodeEye) 활용 가이드 및 검사대행 컨설팅**: Offers a free service for license inspection, provides usage guidelines, and performs inspection and reporting on behalf of companies.
-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거버넌스 컨설팅**: Provides guidance on governance, including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.
-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일반 컨설팅**: Provides general consulting services related to license usage.

On the left side of the page, there is a sidebar for the CodeEye service, which includes a logo, a brief description, and links for "계정신청" (Account Application), "메뉴얼" (Manual), and "코드아이 Client". At the bottom left, there is a "공지사항" (Notice) section with a link to "[공지] CodeEye 서비스 정상화 완료" ([Notice] CodeEye service restored to normal).



길 잃지 말고 안녕히 가십시오.
감사합니다!